

동행·매력
특별시 서울

서울시보

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www.seoul.go.kr

제4104호
2025. 11. 4.(화)



목 차

◆ 자치법규 등

[조 례]

제9893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	2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자치법규 등**[조 례]****◆ 서울특별시조례 제9893호****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**

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오세훈 인

2025년 11월 4일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4항 단서 중 “경우에는” 을 “경우 또는 전임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— <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> —

1. 개정이유

- 현행 조례는 상임위원장 궐위 시 부위원장의 직무대리 방식을 상임위원장이 교섭단체에 속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음.
- 이에 상임위원장 궐위 시 직무대리 지정 방식에 대한 흠결을 보완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상임위원장 궐위 시 전임 위원장이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았던 경우 부위원장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리하도록 함(제43조제4항)



기관의 장	
선	
람	

공 람									